

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(희망사다리 II 유형) 시행계획(안)

2023. 2.

“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”

청년취업장학부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I. 사업 개요 | 1 |
| 1. 추진 목적 | 1 |
| 2. 사업 개요 | 1 |
| II. '23년도 주요 개선 사항 | 2 |
| 1. 보증보험제도 폐지 | 2 |
| 2. 사업 홍보 강화 | 2 |
| 3.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 | 2 |
| III.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 | 3 |
| 1.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| 3 |
| 2. 장학금 신청 및 선발 | 4 |
| 3. 장학생 의무사항 등 | 7 |
| 4. 사후관리 | 7 |
| 5. 추진 일정 | 8 |

[별첨] 2023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 유형) 업무
처리기준

I 사업 개요

1 추진 목적

- “고교졸업 → 대학진학”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* 해소를 위해 「선취업 - 후학습」 활성화 필요

* 향후 10년간,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/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('17, '16-'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), 고용노동부

2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'23. 3월 ~ '22. 12월(신청기간 포함)
- 사업규모 : 51,600백만원
 - * 사업운영비 : 1,858백만원 별도(1·11유형 공통)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 요건*을 충족한 학생
 -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·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 - *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(현재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)
- 지원금액 :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

〈 최근 5년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지원 실적 〉

| 구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금액(백만원) | 34,505 | 34,412 | 44,607 | 46,042 | 48,015 |
| 건수(건) | 7,528 | 7,149 | 9,261 | 9,382 | 21,640 |
| 인원(명) | 4,611 | 4,893 | 6,045 | 5,902 | 12,522 |

II '23년도 주요 개선 사항

1 보증보험제도 폐지

-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사업 운영비용 절감 및 사업 효과성 제고
 - 절감 예산(연 3억)으로 홍보 및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추진
 - 보증보험 가입 미동의로 인한 탈락자 문제 해소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장학금 신속 지원 가능(예산 집행률 제고)

〈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의무재직 미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환수 현황 〉

| 구분 | '20년 | | '21년 | | '22. 6. | |
|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인원 | 금액 | 인원 | 금액 | 인원 | 금액 |
| 환수 | 15명 | 7.4백만원 | 32명 | 26.2백만원 | 13명 | 10.7백만원 |

2 사업 홍보 강화

- 직장인의 활용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, SNS를 활용한 홍보, 재직 기업·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로 신규 신청자 확대 추진
 -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장학생 선발경쟁률 저하 문제 개선 가능

* 장학생 선발경쟁률: ('20년) 3.2:1, ('21년) 2.1:1, ('22년) 1.7:1

| 장학생 특성 | 홍보 방법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재직자 | 블라인드, 링크드인, 리멤버 | 재직자 대상 홍보 |
| 청년층 | 유튜브, 인스타그램, 대학별 학생회 | 연령대에 적합한 홍보물 제작 |
| 기업·지역별 |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홍보 | 장학금 신규 수요 발굴 기대 |

3 업무처리기준 전면 개정

- 지원 대상, 장학금 의무사항, 장학금 반환 및 환수 기준 등 확립
 - (지원대상) 전문학사 취득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명확히
 - (의무사항) 재직인정 제외기업, 의무재직 인정 기준 등 상세화하여 효과적인 업무처리 및 일관성있는 민원 응대 가능
 - (환수) 환수 사유 및 절차 규정, 환수금액 산정 기준 세분화 등

III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일정

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
- (지원대상)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,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
 - 최종학력은 재단 보유 졸업자 데이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데이터,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
 -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
 -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·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【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】

- ◆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, 제5호(원격대)에 해당하는 대학
- ◆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문문화대, 한국농수산물, 한국에너지공과대학
 - ※ 단,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II 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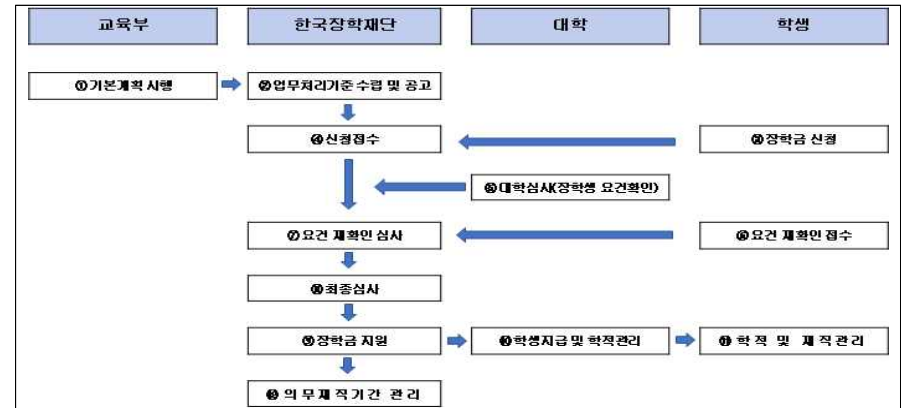
- (재직요건)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,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
 - 다만,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·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
 - * 재직기간 산정에 관한 상세기준은 「업무처리기준」 참고
 - 전문학사 취득자의 재직요건은 별도 기준 적용

- (지원내용)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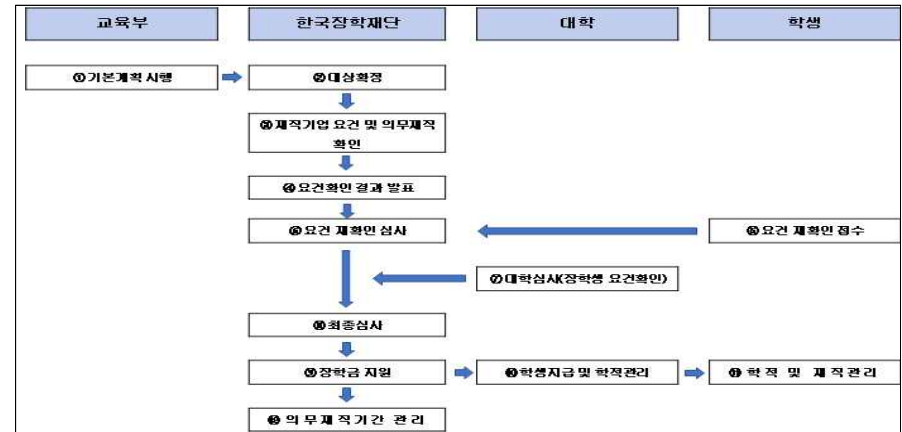
| 기업유형 | 중소·중견기업 | 대기업, 비영리법인, 비사업자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지원금액 | 등록금(필수경비) 전액 | 등록금(필수경비) 50% |

* 필수경비 :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I 유형) 운영 절차 (신규장학생) >

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I 유형) 운영 절차 (계속장학생) >



2 장학금 신청 및 선발

- (신청)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
 -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,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
- (선발)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

- (신규장학생) 최종 학력이 고졸이며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(신·편입생 포함)으로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
- 연령, 재직기관, 출신 고교,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

〈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표 〉

| 항목(배점) | | 세부 배점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1 | 연령 (30점) | ▶ 청년 : 30점(34세 이하) ▶ 비청년 : 20점(35세), 19점(36세) ... 1점(54세 이상) |
| 2 | 재직기관 (40점) | ▶ 중소·중견기업 : 40점 ▶ 비영리기관 : 20점, ▶ 대기업 : 10점 |
| 3 | 출신고교 (25점) | ▶ 직업계고 : 25점, ▶ 위탁교육과정 수료 : 20점 ▶ 일반고 등 : 15점, ▶ 학사(전문학사학위 보유자): 10점 |
| 4 | 기업 재직기간 (5점) | 6년 이상 : 5점, 5년 이상 : 4점, 4년 이상 : 3점, 3년 이상 : 2점, 2년 이상 : 1점, 2년 미만 : 0점 |

〈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 산정 기준 〉

| 구분 | 선발 배점 산정 기준 |
|-----------|---|
| 동점자 처리 기준 | ▶ [1단계] 개별 항목별 고득점 자 - 산정 순서 : 연령 → 재직기관 → 출신고교 → 재직 기간 ▶ [2단계]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소자 우선 ▶ [3단계] 신청일시가 빠른 자 |
| 청년 예외 인정 | ▶ 만 35세 이상~ 만 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▶ 출산 여성(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) |
| 출신고교 확인 | ▶ 직업계고 : 졸업증명서 - 생년월일, 학교, 학과, 이수교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- 졸업증명서로 졸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,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▶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: 수료증 -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,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|

- (계속장학생) 자격 상실 기준*에 해당하지 않으면,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
 - 학적 :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
 - 성적 :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
 - 최대 수혜횟수 :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(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)

| 구분 | 2년제 | 3년제 | 4년제 | 5년제 | 6년제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| 4회 | 6회 | 8회 | 10회 | 12회 |

- 현 재직기업
 -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
 -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
- 의무재직 이행
 -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(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)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

* 자격상실 기준 : 학적, 성적,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

〈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기준 〉

| 구분 | | 자격 상실 기준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학적 | 휴학 | ▶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이 3년(6개 학기)을 초과할 경우 | | | | | | | | | |
| | 자퇴·제적·졸업 | ▶ 사유 발생 시 | | | | | | | | | |
| 성적 | | ▶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| | | | | | | | | |
| 현 재직요건 | | ▶ 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▶ 기업 유형이 미확인된 경우 ▶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 | | | | | | | | | |
| 최대 수혜횟수 | | ▶ 학년제별 최대 수혜횟수 초과 시 | | | | | | | | | |
| 의무재직 이행 | | ▶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(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)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심사기준일</th> <th>이행 기한 만료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학기 장학금</td> <td>심사년도 1월 1일</td> <td>심사년도 12월 31일</td> </tr> <tr> <td>2학기 장학금</td> <td>심사년도 7월 1일</td> <td>차년도 6월 30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심사기준일 | 이행 기한 만료일 | 1학기 장학금 | 심사년도 1월 1일 | 심사년도 12월 31일 | 2학기 장학금 | 심사년도 7월 1일 | 차년도 6월 30일 |
| 구분 | 심사기준일 | 이행 기한 만료일 | | | | | | | | | |
| 1학기 장학금 | 심사년도 1월 1일 | 심사년도 12월 31일 | | | | | | | | | |
| 2학기 장학금 | 심사년도 7월 1일 | 차년도 6월 30일 | | | | | | | | | |

* 기업정보 및 재직 정보를 활용하여 현 재직요건 및 기준 수혜 학기 의무재직 이행 여부 심사

3 장학생 의무사항 등

- (학적유지)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,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
- (의무재직)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해야 하며,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
 - 의무재직기간은 수혜 학기당 4개월로 하며, 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 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함
- (제한사항)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이행기간(1년) 이내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,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
- (현장점검)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점검
 - 장학생 선발, 학적변동 관리, 우선감면, 예산집행(지급·반환 관리 등) 등 종합적 점검

4 사후관리

- (장학금 반환) 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

<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>

| 반환 사유 | 반환 금액 |
|--|-----------------|
| · 장학생이 제적·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을 한 경우 |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|
| · 심사정보 오입력·허위입력으로 장학생이 오선발된 경우 | |
| · 장학금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| 해당 금액 전액 반환 |
| · 교육지원대상자를 등 장학금으로지원하여 대학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|
| · 학자금 중복지원,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, 대학의 장학금 부당 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| |

- (장학금 환수)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해당 금액을 회수
 - 의무재직 유예기간(2년)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
 - 장학금 반환약정 기간(2년)이 종료된 경우
 -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른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(면제)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, 장애, 질병으로 장학생의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, 장학금 반환(환수) 면제 가능

5 추진 일정

- (1학기) 신청접수('23. 3월) 및 장학금 심사·지급('23. 2월~5월)
- (2학기) 신청접수('23. 8~9월) 및 장학금 심사·지급('23. 9월~11월)

| 내용 \ 일정 | 1/4분기 | | | 2/4분기 | | | 3/4분기 | | | 4/4분기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---|-----|-----|
|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 - 사업계획 수립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
| - 장학생 모집 | | ○ | ○ | | | | | ○ | ○ | | | |
| - 장학생 심사 / 장학금 지급 | | | ○ | ○ | ○ | | | | ○ | ○ | ○ | |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